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4. 11. 1.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09호로 2024년 10월 14일 이규선 의원 외 4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의 개선 과제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역 제한 문구 삭제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 문구 삭제(안 제3조)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작성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의 개선 과제 대상으로 우리 구 조례의 지역제한 문구 삭제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 및 안 제5조제1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작성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
- 안 제3조에서는 지역제한 문구를 삭제함.

○ 검토결과

- 서울시에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련 조례로 지역제한 문구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8곳으로 안 제3조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에서 지역 관련 내용을 제외하는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회 축의 폭이 넓어져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됨.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작성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법적합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자료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2 지역제한 문구 삭제 요청한 서울시 등 자치구 현황

연번	기관명	관련 자치법규 명
1	강서구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2	양천구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3	서울시 본청 (재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노원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동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	성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